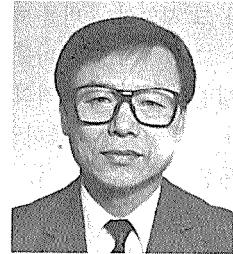


특허출원의 요건 및 분할출원 (VII)



황 의 창
특허청 부이사관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1. 실시권의 의의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 이 외의 자가 특허증명을 업으로서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제3자의 특허증명에 대한 실시를 통해 특허권자의 법익은 물론 특허증명의 이용을 제고하여 기술상품 수급의 조절과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2. 실시권의 종류

가.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증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특허권자 일자라도 전용실시권 설정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의 침해

가 되어 그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과 같은 민사적 구제와 고소에 의한 형사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나. 통상실시권

(1) 의 의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특허법의 규정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특허증명을 업으로서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배타권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동일조건 즉 같은 지역, 같은 기간, 같은 내용 등으로 둘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음은 물론 특허자 자신 또한 실시에 관한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 특허증명을 자유로이 실시 할 수 있다.

(2) 통상실시권의 유형

(가) 협약실시권

협약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특허권자와 그 특허증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타인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법정실시권

법정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와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정사항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이 실시권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②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당시에 이미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그 발명을 한 자로 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관한 통상실시권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증명 및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권자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 또는 원실시권의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질권경력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질권설정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락되더라도 원특허권자는 그 특허증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거절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해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및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자 또는 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표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 실시권을 진다.

⑦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허야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 실권의 사업의 목적 및 특허발명의 범위내에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특허증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

를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재정청구는 그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실시권의 효력

(1) 전용실시권

(가)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요건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 제외)·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및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 제외)·변경·소멸 또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중 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전용실시권의 효력

등록된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의

범위 안에서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그 설정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독점권과 타인의 무단실시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면복청구권 및 고소 등을 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갖는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 통상실시권

(가)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요건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등록이 대항 요건이다.

(나) 통상실시권의 효력

통상실시권은 설정의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이 그와 같은 발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형사상의 고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 실시권의 이전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 및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이

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이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

마. 질권의 설정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할 수 있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자는 설정의 범위내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바. 보상금 및 대가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실시대가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합의 즉 계약에 맡기고 있다.

(2) 통상실시권

(가) 허락실시권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다.

(나) 강제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결정되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재정으로 대가가 결정되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는 심판에 의하여 그 대가가 결정된다.

(다) 결정실시권

법정통상실시권 중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및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만료된 의장권의 의장권자)은 특허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의장권에 설정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경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의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 실시권의 소멸

실시권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되는 특허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과 실시권 설정기간의 만료, 실시권의 포기, 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하여 소멸되는 실시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이 있다.